

#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4. 11. 2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환복 마이스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포항시 마이스(MICE)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·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○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내 부대·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 3. 관련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○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준공에 앞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에 위해서는 세심한 사용료 부과 기준과 할인·감면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